북일고 장학금 지급 규정 및 학비감면 지원기준

북일고등학교

Ⅰ. 재학생 장학제도

장학종별	구분	인원	선발기준	수혜범위 (학기당)	비고
일반계	한화 Global	학년당 15명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100만 원	
	한화 Passion	학년당 30명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70만 원	
	한화 Challenge	학년당 50명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50만 원	
	한화 Humanity	학년당 5명 내외	학비감면 비대상자 중 기타 사유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120만 원	
야구부	체육특기자 (야구)		체육특기자(야구)로 선발된 자	입학금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별도 지원
학비 감면 지원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중 법정면제자 및 경제적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입학금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별도 지원
		차상위계층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청대상자 확인원'을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기 타 장학생	졸업동문 장 학 생	약간명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추천 선정된 자		북일총동문회 지원
	대 외 장학생	약간명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추천 선정된 자		

* 성적 상위자는 [붙임1]의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 1학기 장학생 선정은 5월 말, 2학기 장학생 선정은 8월 말에 한다. 행정실에 학비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 재학 중 학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교내봉사 2회, 그 외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은 1회)를 받은 학기 이후의 2개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계 적용 기간은 장학생 심사 학기까지 징계 건수를 누적 적용함.(단, 징계로 인해 장학생 선정에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 징계 사항은 다음 심사에서 제외함.)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생 및 학생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함.
* 기타 외부 장학금 및 학비 감면은 중복지급을 피하여 장학생 및 학생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선정함.
* 본 장학금 지급 규정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Ⅱ. 졸업생 장학제도

(※ 2017학년도 북일고 및 북일여고 신입생 기준)

장학종별	수혜대상	비고
졸업생 장학금	국내 대학에 진학한 자로 북일학원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가정형편, 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연간 400만 원 (1년마다 재심사)

※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가정형편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소득구간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도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평점3.0)에 미달한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장학생 평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진로진학부장, 전년도 3학년부장, 당해연도 3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 본 장학금 지급 규정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붙임1] 성적 상위자 장학생 선정 방법

가. 신입생

1)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의 원점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급함.

2) 원점수 합 기준 동석차의 경우, 백분위가 산출되는 과목의 백분위 합이 높은 순으로 석차를 구분함.

나. 재학생 - 석차등급제를 사용

(가) 직전 학기 등급 점수 단위 수 가중 총점이 낮은 자

① 각 등급의 숫자를 점수화하여 부여
예) 1등급 → 1점, 2등급 → 2점 등

② 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는 A, B, C를 점수화하여 부여
예) A → 1점, B → 2점, C → 3점

③「각 등급 점수×단위수」의 총합

④ 학기 전체 이수 단위가 다른 경우 낮은 단위수를 높은 단위수로 비례 환산한다.(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⑤ 내신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진로선택과목, 과학탐구실험 등)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석차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타 석차등급 환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연도 충청남도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한다.

2024학년도 입학생(현 3학년)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현 1, 2학년)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 이하	1등급	~ 10% 이하
2등급	4% 초과 ~ 11% 이하		
3등급	11% 초과 ~ 23% 이하	2등급	10% 초과 ~ 34% 이하
4등급	23% 초과 ~ 40% 이하		
5등급	40% 초과 ~ 60% 이하	3등급	34% 초과 ~ 66% 이하
6등급	60% 초과 ~ 77% 이하		
7등급	77% 초과 ~ 89% 이하	4등급	66% 초과 ~ 90% 이하
8등급	89% 초과 ~ 96% 이하		
9등급	96% 초과 ~ 100% 이하	5등급	90% 초과 ~ 100% 이하

⑥ ‘이수’, ‘미이수’로만 처리되는 교양 과목, 2024학년도 입학생인 현 3학년 기준 14명 미만으로 등급 환산이 어려운 과목,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인 현 1, 2학년 기준 5명 이하로 등급 환산이 어려운 과목은 성적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각 등급별 장학금 지급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과목의 (이수단위)×(원점수) 총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석차를 구분한다. 최하위에서 동점자들이 생긴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 등급의 장학금을 중복수혜하며, 하위 단계 장학생 수를 중복수혜자들의 수만큼 줄인다. 단, 최하위 등급에서의 동점자는 인원에 관계없이 중복 수여한다.

(다) 교육과정의 개정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과목의 성적산출방식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장학생 및 학생포상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선정된 학생이 학비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증서만 지급한다.
※ 본 장학금 지급 규정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